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

제 정 : 2023.03.02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구성, 권한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 조의 6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2 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회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,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

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(해 임)

위원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6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 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 각자에 대하여 개최시기,

장소 및 안건을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의 2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.

1.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
2.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
3.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 11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 (통지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23.3.2)

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